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11. 10.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발의일자 : 2008년 10월 30일

나. 발 의 자 : 구애라 의원 외 8인

다. 회부일자 : 2008년 11월 5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 11. 6)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구애라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법제명과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로 한다.  
(안 제1조)
- 『지방재정법』 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한다.(안 제12조 제1항)
- “총무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안 제21조 제2항)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오운)

-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특허법』이 『발명진흥법』으로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인용 법률명과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영등포구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속히 상위법령 등에 맞추어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0
----------	-----

발의년월일 : 2008년 10월 일  
발의자 : 구애라의원 의원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법제명과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특허법」 개정에 다른 법제명 변경
  -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로 한다  
(안 제1조 중)
- 나. 「지방재정법」 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한다.  
(안 제12조 제1항 중)
- 다. 「총무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안 제21조제2항 중)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
-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다. 사전합의 : 필요 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u>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2조 (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u>지방재정법 제76조</u>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u>총무국장</u>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p>	<p>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p> <p>제1조 (목적) --- <u>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u> -----</p> <p>-----</p> <p>-----</p> <p>-----</p> <p>-----</p> <p>-----</p> <p>-----</p> <p>제12조 (특허권의 등록) ①-----</p> <p>-----</p> <p>-----<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u>-----</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 (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행정국장</u> -----</p> <p>-----</p> <p>-----</p> <p>-----</p>

# 【관계법령】

## □ 발명진흥법

- 제10조 (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시행일:2007.6.29]
-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 ③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9조 (공부등록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②부동산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교육감"으로 그 소관청의 명칭을 첨기(添記)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6조(행정국)** ①행정국에 행정지원과, 기획홍보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07.07.26>
- ②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고, 각 과장 및 여유기구인 주민자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2007.07.26>